

수원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가합60323 판결 [구상금 및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변 론 종결 2016. 1. 14.

판결 선고 2016. 2.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79,608,463원과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3.부터, 1억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49,880,192원에
대하여는 2016. 1. 15.부터 각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6,291,51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 2013. 1. 10. 아프로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프로캐피탈')로부터 5,000만 원, 2 2013. 2. 1.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 3 2013. 2. 4.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 4 2013. 2. 4. 굿모닝캐피탈로부터 700만 원, 5 2013. 2. 4. 메리티지캐피탈로부터 700만 원, 6 2013. 2. 4. 스타캐피탈로부터 800만 원, 7 2013. 2. 4. 밀리니엄캐피탈로부터 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4. 4. 1.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 본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금액 9,800만 원을 매월 이자 납입 및 원금 상환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자 납입과 원금 상환이 연체되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 ·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갑2호증,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일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여 위 채무의 원금은 총 59,502,667원 남아있고, 피고 C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아프로캐피탈이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제1, 2층 가호 주택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 채권자들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라. 원고는 시티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2억 1,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 B은 원고에게 1 2014. 4. 1.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4. 1.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2 2014. 4. 1.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6. 30.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갑3호증의 1, 3, 이하 '2014. 4.1.자 각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3 2014. 4. 3. 원고가 9,000만 원을 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시티은행에 대출일인 2014. 3. 31.부터 5년간 상환하여야 하는 할부금 월 1,649,000원(매월 30일 지급)을 피고 B이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4 2014. 4. 3. 원고가 3,000만 원을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하나캐피탈에 대출일인 2014. 4. 3.부터 4년간 상환하여야 하는 할부금 월 693,236원(매월 5일 지급)을 피고 B이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갑 3호증의 2, 4, 이하 '2014. 4. 3.자 각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이하 위 확인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확인서').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들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 C에 대하여 원고가 위 피고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후구상권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 제442조에 따라 사전구상권을 행사하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 확인서를 작성해줌으로써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그 외에도 원고로부터 총 234,93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는 모두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피고 B과 결혼을

약속하였던 사람으로, 피고 B와 함께 살기 위한 터전을 마련할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들에게 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105867 판결 참조).

피고 C가 아프로캐피탈 등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합계 9,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가 피고들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2014.4. 1. 원고에게 '채무자인 피고 C의 모친인 피고 B 본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금액 9,800만 원을 매월 이자 납입 및 원금 상환을 철저히 이행하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이 연체되어 연대보증인인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 ·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연대보증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 C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하여 위 채무의 원금이 총 59,502,667원 남아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이미 변제한 피고 C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사후구상금 38,497,333원(= 98,000,000원 - 59,502,667원)과 남아있는 피고 C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1)에 따른 사전구상금 59,502,667원 합계 9,8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이 사건 연대보증 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연대보증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고가 시티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중 2억 1,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 위 돈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2014. 4. 1. 원고가 1억 1,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4. 1.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원고가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2015. 6. 30.까지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각 작성해주었고, 2014. 4. 3. 원고가 9,000만 원을 시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시티은행에 대출일인 2014. 3. 31.부터 5년간 상환하여야 하는 할부금월 1,649,000원(매월 30일 지급)을 피고 B이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원고가 3,000만 원을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하나캐피탈에 대출일인 2014. 4. 3.부터 4년간 상환하여야 하는 할부금 월 693,236원(매월 5일 지급)을 피고 B이 변제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중 1억 1,000만 원을 2015. 4. 1.까지, 2,000만 원을 2015. 6. 30.까지 변제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1억 1,000만 원 + 2,000만 원)과 그 중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4. 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각 돈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15. 2. 3. 이전에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은 2014. 4. 1.자 각 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2014. 4. 1.자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시티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는 할부금 월 1,649,000원(매월 30일 지급) 상당액과 원고가 하나캐피탈에 상환하여야 하는 할부금 월 693,236원(매월 5일 지급)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표 기재와 같이 51,608,463원과 그 중 원금 49,880,192원[= (1,649,000원 × 21개월) + (693,236원 × 22개월)]에 대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1.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순번	원금(원)	기산일	종료일	연이율	일수(일)	원리금(원) ²⁾
1	16,490,000 ³⁾	2015. 2. 3. ⁴⁾	2016. 1. 14.	5%	346	17,271,581
2	1,649,000	2015. 3. 1.	2016. 1. 14.	5%	320	1,721,285
3	1,649,000	2015. 3. 31.	2016. 1. 14.	5%	290	1,714,508
4	1,649,000	2015. 5. 1.	2016. 1. 14.	5%	259	1,707,506
5	1,649,000	2015. 5. 31.	2016. 1. 14.	5%	229	1,700,729
6	1,649,000	2015. 7. 1.	2016. 1. 14.	5%	198	1,693,726
7	1,649,000	2015. 7. 31.	2016. 1. 14.	5%	168	1,686,950
8	1,649,000	2015. 8. 31.	2016. 1. 14.	5%	137	1,679,947
9	1,649,000	2015. 10. 1.	2016. 1. 14.	5%	106	1,672,944
10	1,649,000	2015. 10. 31.	2016. 1. 14.	5%	76	1,666,168
11	1,649,000	2015. 12. 1.	2016. 1. 14.	5%	45	1,659,165
12	1,649,000	2015. 12. 31.	2016. 1. 14.	5%	15	1,652,388
13	6,932,360 ⁵⁾	2015. 2. 3.	2016. 1. 14.	5%	346	7,260,935
14	693,236	2015. 2. 6.	2016. 1. 14.	5%	343	725,809
15	693,236	2015. 3. 6.	2016. 1. 14.	5%	315	723,150
16	693,236	2015. 4. 6.	2016. 1. 14.	5%	284	720,206
17	693,236	2015. 5. 6.	2016. 1. 14.	5%	254	717,357
18	693,236	2015. 6. 6.	2016. 1. 14.	5%	223	714,413
19	693,236	2015. 7. 6.	2016. 1. 14.	5%	193	711,564
20	693,236	2015. 8. 6.	2016. 1. 14.	5%	162	708,620
21	693,236	2015. 9. 6.	2016. 1. 14.	5%	131	705,676
22	693,236	2015. 10. 6.	2016. 1. 14.	5%	101	702,827
23	693,236	2015. 11. 6.	2016. 1. 14.	5%	70	699,883
24	693,236	2015. 12. 6.	2016. 1. 14.	5%	40	697,035
25	693,236	2016. 1. 6.	2016. 1. 14.	5%	9	694,091
합계	49,880,192					51,608,463

원고는 위 인정 범위를 넘어 위 피고에게 지급한 금액인 8,500만 원(= 6,000만 원 + 2,500만 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핀 금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B은 2014. 4. 3.자 각 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2014. 4. 3.자 각 확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이외에도 2014. 5. 28. KB카드론을 통하여 대출받은 돈 993만 원과 2014. 7. 1. 신한카드론을 통하여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았거나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가 2014. 5. 28. KB카드론을 통하여 대출받은 돈 993만 원과 2014. 7. 1. 신한카드론을 통하여 대출받은 1,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대여금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식당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어서 상법 제57조 제1항 소정의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C가 피고 B과 함께 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에게, 피고 B은 279,608,463원(= 98,000,000원 + 130,000,000원 + 51,608,463원)과 그 중 98,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4. 2.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5. 7. 1.부터, 49,880,19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1. 15.부터 각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중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5. 2. 3.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연 20%가 아닌 연 15%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적용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본 인정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호, 판사 심학식, 판사 홍승모

1) 민법 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2) 원금 + (원금 × 연이율 × 일수 ÷ 365)

3) 1,649,000원 × 10회분(2014. 4.분부터 2015. 1.분까지)

4) 원고는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2. 3.을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다.

5) 693,236원 × 10회분(2014. 4.분부터 2015. 1.분까지)